

2022

08

통권 468호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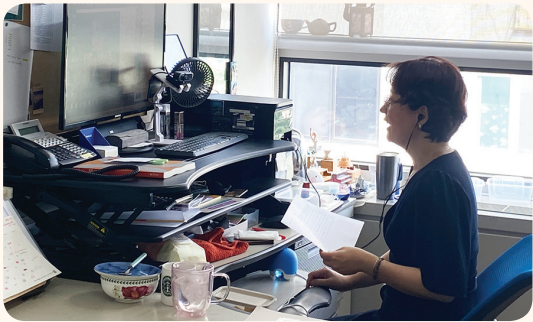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 관련 화상상담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세요
www.lawhome.or.kr





본소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화상상담의 실시로 그동안 상담을 원했으나 장소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본소 방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PC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문상담위원과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기사 33면)



지난 7월 18일 본소 8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사업인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간담회가 있었다. (관련 기사 33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나부터 지킨 양심, 모아지면 청렴 한국!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21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
- 22 • 가정폭력상담실
- 24 • 어떻게 할까요
- 26 • 결혼과 인생(227) 영화 이야기
브로커 _ 김용언
- 28 • 좋은 책
H마트에서 울다
- 29 • 실습소감문
-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누하동 코너집 참나리꽃〉



국가와 사회는 모든 가족, 가족구성원에게 최후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족 살해 후 자살에 대하여 (1)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난 6월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차량 견인 과정과 실종 직전 숙소에서 찍힌 CCTV 등을 보면서 말로다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입에 담거나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 있는 강력 사건들입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가족 살해 후 자살’로 많이 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심하게 ‘동반자살’로 일컬어지곤 했던 사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최근 이 비슷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생각해 하였습니다.

‘가족 살해 후 자살’이나 특히 최근 더욱 빈번하게 느껴지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등은 살해와 자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최악의 폭력이며 학대이고 심각한 범죄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공식 통계조차 없어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알아보려면 관련 논문, 연구자료, 보고서 등을 통해 유추해야 합니다.

경찰 발표를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족 살해 후 자살’은 1995년과 1996년에는 각 16, 18건 그리고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7년과

1998년에는 각 28건과 25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에는 14건, 2018년에는 20건 그리고 2019년에는 10월까지 1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대한법의학회지에 실린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연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부모의 자녀 살해는 모두 230여 건으로 해마다 30, 40건에 이르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가운데 보통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살’입니다. 2021년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원인으로서 ‘자살’은 순위가 내려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39세까지의 사망원인으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심리적 부검을 통해 이러한 현황을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3월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국내 살해 후 자살의 현황과 특성』은 국내 ‘살해 후 자살’ 실태를 경찰 수사기록으로 파악한 첫 연구라하여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에 대한 경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269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자살자의 주원인이 정신건강 문제인 것과는 달리, 이 경우는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자살사망자 가운데 살해 후 자살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44%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0.11명인 셈입니다. 살해 후 자살사망자는 공식 통계를 집계하는 경우가 드물어 국제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공식 통계를 집계하는 네덜란드는 인구 10만 명당 살해 후 자살사망률은 0.05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 ‘살해 후 자살’ 사망률이 꽤 높은 편이라고 연구진은 진단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로 살해 후 자살 사건을 구분

하였는데 배우자나 애인이 대상인 ‘동반자 살해’, 자녀가 대상인 ‘자녀 살해’, 배우자와 자녀·다른 가족 구성원을 동시에 살해한 경우인 ‘가족 살해’, 피해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 외 살해’입니다.

5년간 발생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동반자 살해로 113명이었습니다. 이어 자녀 살해가 82명, 가족 살해가 47명, 가족 외 살해가 27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형에서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자녀 살해 유형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에 의한 ‘자녀 살해 후 사망’ 사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반자 살해 유형은 60대 이상의 고연령대에서 비율이 높았고, 자녀 살해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돌봄 끝에 살해하고 자살하는 노부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끝에 장애인 자녀나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가족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과 관련한 자살 즉 우리 사회에서 존속과 비속을 모두 포함한 가족 살해는 전체 살인사건의 5%를 차지하는데, 영국은 1%, 총기 소유가 합법인 미국은 2% 정도라고 하니 한국이 미국보단 2.5배, 영국보단 5배 높은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가족 살해 후 자살’ 그리고 ‘자녀 살해 후 자살’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족’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가족’과 ‘가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족과 가정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펼쳐갈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와 여전한 코로나19 팬데믹이지만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앞에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1980년대 후반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전통적인 혼인제도 이외에 두 사람 사이의 법적인 결합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혼인과 구별하여 보통 등록동반자관계라고 명명되었던 이 제도는 처음에는 주로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동성 2인 사이에서만 허용되었고 이성간에 대해서는 개방되지 않았다(예를 들어 1989년에 세계 최초로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한 덴마크는 동성간에 한하여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였다). 이성간의 법적 결합으로는 이미 혼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새로운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초기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혼의 대안이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효력면에서도 가능하면 혼인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초기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간의 준혼(혼인에 준하는 관계)이라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후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동성혼이 입법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성격을 지닌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잃게 되었다. 초기에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

계를 도입했던 나라에서 동성혼의 입법과 더불어 더 이상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2012년에 동성혼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도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혼인제도 이외에 두 사람간의 새로운 법적 결합을 모색하면서 동성간과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는 동성간은 물론 이성간의 결합을 허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면에서는 나라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혼인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한 ‘무거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제도), 혼인과 비교하여 성립과 효력, 해소에 있어서 ‘가벼운 결합’을 선택한 입법례도 있었다(프랑스의 PACS, 벨기에의 법정동거). 이러한 제도는 처음부터 단지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국가에 동성혼이 도입된 후에도 그와 관계없이 별개의 제도로서 존속할 수 있었다. 최근의 통계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에 대

* 이 원고는 지난 6월 24일 열렸던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발표자인 김상용 교수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혼인보다 ‘가벼운 결합’을 선택한 나라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사회에서 전통적인 혼인제도와 비교하여 보다 가벼운 결합을 원하는 대중적 욕구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했던 독일, 그와 달리 동성 및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입법례를 간략히 소개하고(비교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서 소개한다), 후자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본다.

II. 독일의 생활동반자관계

1. 도입과 현황

독일에서는 2001년 8월 1일부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¹⁾이 시행되고 있다. 생활동반자관계란 그 실질에 있어서 동성간의 준혼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동성혼의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독일정권권이 동성혼에 이르는 일종의 과도적인 상태로서 생활동반자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2001년에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동성간의 결합에 가족법상의 지위가 인정되었고,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혼이 허용되면서 동성부부의 법률상의 지위는 이성간의 부부관계와 동일하게 되었다. 동성간의 혼인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따라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은 2017년 10월 1일 이전에 독일에서 성립한 생활동반자관계와 외국에서 성립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²⁾ 기존에 이미 성립한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

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로 전환할 수도 있고(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20조a), 기존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 2017년 10월 1일 전까지 독일에서는 매년 약 7,000건 가량의 생활동반자관계가 등록되었으며(2014년: 7,112, 2015년: 7,401, 2016년: 7,733), 동성혼이 시행된 이후 동성혼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2018년: 이성혼 449,446, 동성혼 21,757, 2019년: 이성혼 416,324, 동성혼 14,021, 2020년: 이성혼 373,304, 동성혼 9,939).

2. 성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10월 1일부터 독일에서 동성간의 혼인이 허용되면서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며,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성립에 관한 규정은 모두 삭제되었다. 2001년 시행 당시의 법률은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³⁾ i) 생활동반자관계는 동성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이 점에서 독일법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체코, 헝가리 등과 같고,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결합까지도 허용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과 구별된다). ii)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하여 일생 동안(auf Lebenszeit)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이러한 의사표시는 관할관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신분등록공무원은 이를 신분등록부와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일생 동안 생활동반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어의 ‘Lebenspartner’는 단순한 생활동반자라기 보다는 ‘인생의 반려자’ 또는 ‘인생의 동반자’로 번역하는 것이 그 관계의 실질과 무게감에 부합하는 번역이라고 생각된다(다만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생활동반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

1)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vom 16. Februar 2001.

2) 동성혼이 허용된 후에도 그와 병행하여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이 허용되는 나라들도 있다(예를 들어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2010년부터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가 허용되었고, 2019년부터 동성혼이 인정되었는데, 2019년부터 등록동반자관계를 이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개방하였다. 반면에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동성혼을 허용하면서 동성간의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3) 2001년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용된 점을 감안하여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iii) 미성년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다(혼인과 달리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iv) 이미 혼인 중이거나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중으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다. v)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부 또는 모만을 같이 하는 형제자매 포함) 사이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없다. vi) 생활동반자 사이에 부양과 돌봄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가장 생활동반자관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3. 효력

(1) 생활동반자 사이의 관계

①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과 마찬가지로 일생에 걸친 법적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생활동반자는 서로에게 부양, 협조, 돌봄의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생활을 영위할 의무를 진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생활동반자는 역할분담에 관한 합의에 따라 소득활동 또는 가사를 통하여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5조).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후에는 각자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부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 생활동반자에 대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생활동반자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성(姓)을 쓸 수도 있고(공통의 성을 정하는 경우에는 동반자 각자의 출

생 당시의 성이나 공통의 성을 정할 때까지 사용해 왔던 성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때까지 사용했던 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성이 공통의 성으로 정하여지지 않은 동반자는 공통의 성 앞이나 뒤에 이제까지 자신이 사용해온 성이나 출생 당시의 성을 붙일 수도 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2001년 시행 당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은 혼인의 경우와 달리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전에 생활동반자관계에 적용될 재산관계의 유형을 선택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혼인에 있어서의 법정부부재산제인 부가이익공동제(증가재산분할제⁴⁾)를 비롯하여 공유제, 별산제 등의 재산관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 2004년 개정(2005년 1월 1일 시행⁵⁾)으로 재산관계에 있어서 생활동반자관계와 혼인 사이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이제 생활동반자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법정부부재산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부부재산제인 증가재산분할제란, 혼인 중에는 큰 틀에서 별산제를 유지하되,⁶⁾ 혼인해소 시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을 균분하여 분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⁷⁾

④ 2001년 시행 당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은 혼인해소의 경우와 달리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시의 연금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004년 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한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연금청산에 관한 법률⁸⁾이 적용됨에 따라 생활동반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청산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20조). 상대방이 장래 수령하게 될 연금에 대한 권리와 현재 수령하고

4) 독일의 법정부부재산제인 'Zugewinnngemeinschaft'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부가이익공동제로 번역되고 있으나,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을 균분하여 분할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증가재산분할제로 번역하였다. 김상용,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 법조 554호(2002. 11), 146면 참조.

5) Gesetz zur Überarbeitung des Lebenspartnerschaftsrechts vom 15.12.2004.

6)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첫째, 생활동반자가 각자에게 속한 전 재산(거의 전 재산. 예를 들어 어느 재산이 전 재산 가액의 85% 내지 90%를 차지하는 경우. BGH NJW 1991, 1739/1740)을 처분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독일민법 제1365조 제1항 1문). 보통 주택은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생활동반자 각자에게 속한 가재도구를 처분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독일민법 제1369조 제1항).

7) 다만 사망으로 인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시에는 생존 동반자는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의 4분의 1을 더 받는 방식으로 부부재산관계를 청산한다(독일민법 제1371조 제1항 전단).

8) Gesetz über den Versorgungsausgleich.

있는 연금에 대한 권리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되며, 법정연금보험(근로자와 일정한 범위의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노령연금)에 의한 권리, 공무원연금이나 직능별 연금(의사, 약사,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하는 노령연금)과 같은 그 밖의 일반보장체계상의 권리, 기업노령연금상의 권리, 사적 노령연금상의 권리, 사적 장애연금상의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⁹⁾ 연금의 청산에 대한 권리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적용되는 재산관계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예를 들어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할 때 재산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든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시 별산제를 선택하여 별산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든 연금의 청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후의 부양과는 달리,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던 일방이 스스로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취득한 연금에 대한 권리는 균등한 비율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¹⁰⁾

(2) 부모와 자녀의 관계

① 혼인한 부부와는 달리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 다만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일방이 자녀¹¹⁾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일단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일방이 자녀를 입양하면, 그 후 다른 일방이 순차적으로 그 자녀를 또 입양하는 것은 허용된다.¹²⁾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자는 생활동반자 쌍방의 공동의 자녀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결과에 있어서는 공동입양을 한 것과 차이는 없다.

2001년 법 시행 당시에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나(즉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 독일의 입법자는 생활동반자 쌍방이 공동으로 자녀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2004년 개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상대방의 양자 또는 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

9) 연금청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독일의 노령연금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영미, 독일의 노후소득보장법제와 시사점,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2014), 74면 이하 참조.

10) 연금청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항.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던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 대해서 연금청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쌍방은 동시에 각각 연금청산의 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모두 사무직 근로자로서 법정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일방 A는 연금에 대한 권리의 청산으로서 자신의 연금포인트 중 8EP(Entgeltspunkte의 약자인데 Rentenpunkte라고도 칭하며, 일종의 연금포인트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를 상대방 B에게 양도해야 하고, B는 A에게 4EP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상계하여 A는 B에게 4EP만을 양도하면 된다(연금청산법 제10조 제2항. Johannsen/Henrich/Althammer/Holzwarth, 7. Aufl. 2020, VersAusglG §10 Rn. 10 참조); EP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예에서 A의 1년간 소득이 모든 보험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같다면, A는 1년간 1EP를 취득한다. A가 45년간 계속해서 모든 보험가입자의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렸다면, A는 총 45EP를 취득하게 된다(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구 서독지역에서 1EP는 36.02유로이다). A가 이 상태에서 퇴직하여 연금을 받게 된다면 월 1,620.9유로(45.02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와 같이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될 때 연금에 대한 권리의 청산으로서 A가 B에게 4EP를 양도하였다면, A는 41EP에 대해서 연금을 받게 되므로 월 약 1,476유로를 수령하게 될 것이다(결과적으로 A의 연금수령액은 월 144유로 감소된다). 위의 예에서 A는 B와 16년간 생활동반자관계를 유지하여 그 기간 동안 16EP를 취득하였고,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되면서 연금에 대한 권리의 청산으로 B에게 그 중 절반인 8EP를 양도하게 되는 것이다(반면에 B는 같은 기간 동안 8EP를 취득하여 그 절반인 4EP를 A에게 양도해야 한다). 만약 B가 가사에 종사하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취득한 연금포인트가 없다면, A는 B에게 자신이 취득한 16EP의 절반인 8EP를 양도해야 한다.

11)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자녀가 아니라 제3자의 자녀(fremdes Kind)를 말한다.

12)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러한 방식의 순차적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생활동반자에 대해서 공동입양을 금지한 취지를 잠탈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19일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생활동반자 쌍방에 의한 순차적 입양을 금지하고 있는 당시의 법상태를 위헌으로 판단하였으며(BVerfG FamRZ 2013, 521. 생활동반자와 해당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2문이 개정되었다(Gesetz zur Umsetzung der Entscheidung des BVerfG zur Sukzessivadoption durch Lebenspartner vom 20.6.2014).

가능하게 되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2문). 이러한 경우 그 자녀는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공동의 자녀가 되므로(두 사람의 생활동반자는 자녀의 공동친권자가 된다), 생활동반자 쌍방에 대해서 부양청구권을 가지고, 상속권도 취득하게 된다. 생활동반자에게도 부부와 같이 공동입양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입양을 원한다면 현재로서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혼인으로 전환한 후 공동입양을 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다.

② 생활동반자관계의 일방(단독친권자)이 자신의 친생자나 양자를 생활공동체에 데리고 들어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의 신분을 갖지 않는) 상대방은 친권자와 협의하여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항¹³⁾에 대해서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¹⁴⁾ 또한 지체를 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친권자의 결정을 적시(適時)에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¹⁵⁾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갖는 부모의 일방과 그의 생활동반자가 자녀와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활동반자가 공동으로 쓰는 성을 부여할 수 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생활동반자가 별거하는 때 또는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

된 경우, 자녀와 오랜 기간 가족공동생활을 해왔던 생활동반자에게는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독일민법 제1685조 제2항). 물론 면접교섭권이 언제나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기여하고 생활동반자와 자녀 사이에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속

① 상속에 있어서 생활동반자는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과 유류분권(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갖는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망한 생활동반자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생존한 생활동반자의 상속분은 4분의 1이며,¹⁶⁾ 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의 청산으로 상속재산의 4분의 1을 더 받는다(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¹⁷⁾ 사망한 생활동반자의 부모나 형제자매¹⁸⁾ 또는 조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될 때에는 생존 생활동반자의 상속분은 2분의 1이다(이외에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의 청산으로 4분의 1을 더 받는 것은 동일하다. 결국 생존 생활동반자의 몫은 4분의 3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때에는 생존 생활동반자는 단독상속인이 되어 전 재산을 상속한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문).

② 이외에 생존 생활동반자는 공동생활에 사용하던 가재

13) 일상적인 자녀의 돌봄, 음식을 제공하고 의복을 입히는 것 등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BeckOK BGB/Hahn, 62. Ed. 1.5.2022, LPartG §9 Rn. 4.

14)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친권자의 의사가 우선한다고 해석된다. Veit, Kleines Sorgerecht für Stiefeltern, (§1687b BGB), FPR 2004, 67/71; MüKoBGB/Duden, 9. Aufl. 2022, LPartG §9 Rn. 3.

15)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병원에 입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는 생활동반자는 단독으로 자녀를 대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필요한 의료적 처지에 동의하고, 의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eckOK BGB/Hahn, 62. Ed. 1.5.2022, LPartG §9 Rn. 5; 다만 휴대폰의 보급으로 누구와 언제든지 연결이 가능하게 된 현대사회에서 친권자에게 적시에 연락되지 않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실질적 의미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MüKoBGB/Duden, 9. Aufl. 2022, LPartG §9 Rn. 6.

16) 제1순위 상속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문.

17) 예를 들어 생활동반자관계에 있던 일방 A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A가 남긴 상속재산이 2억이고 A에게 자녀 C와 D가 있다면 생존 생활동반자 B는 재산관계의 청산으로 그 중 4분의 1(5천만원)을 받고, 법정상속분으로 4분의 1(5천만원)을 더 받는다(결국 A는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받게 된다).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4분의 1이므로, C와 D는 각각 5천만원을 받게 된다.

18) 제2순위 상속인. 피상속인의 부모 및 그 직계비속이 제2순위 상속인이므로, 형제자매 외에 조카도 포함된다.

도구를 다른 상속인¹⁹⁾에 우선하여 취득할 수 있다.

사망한 생활동반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생존 생활동반자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1조).²⁰⁾

4.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

생활동반자관계는 일방의 사망이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해소된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판에 의한 해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1년 이상의 별거를 전제로 하여 생활동반자 쌍방이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청구하거나, 일방이 청구하고 다른 일방이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동의하는 경우, ii) 생활동반자 쌍방이 1년 이상 별거하고 있으며, 생활동반자관계가 파탄되어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생활동반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때에는 피청구인이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iii) 생활동반자 쌍방이 3년 이상 별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방이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청구한 경우(피청구인이 해소에 반대하더라도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iv) 생활동반자관계의 계속이 청구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예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별거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동반자 쌍방이 3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생활동반자관계의 해

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생활동반자관계의 해소가 이를 반대하는 피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생활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를 들어 생활동반자관계가 해소될 경우에 피청구인이 자살할 위험이 있는 경우).

III. 프랑스

1. PACS²¹⁾의 도입과 현황

(1) 프랑스의 PACS는 「PACS에 관한 1999년 11월 15일 법」²²⁾을 통해 제정되고 다음 날인 1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프랑스에서 PACS가 제정된 이유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³⁾ 외부적 요인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일련의 유럽국가들(1989년 덴마크, 1993년 노르웨이, 1994년 스웨덴, 1996년 아이슬란드)에서 동성간의 결합에 혼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나타난 혼인율의 감소와 자유로운 동거의 증가를 들 수 있다.²⁴⁾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는 복잡한 이혼절차, 이혼의 효과로 인한 부양, 재산분할 등에 부담을 느낀 젊은 세대가 혼인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프랑스 정부는 혼인에 비하여 부담이 적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동성간의 결합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이 겹치면서 프랑스 정부는 동성간의 결합과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PACS

19) 생존 생활동반자가 제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항상 우선하여 취득하며, 제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생존 생활동반자가 가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재도구에 대한 선취권이 인정된다(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3문, 4문).

20) 독일민법 제563조, 제563조a 참조. BeckOK BGB/Hahn, 62. Ed. 1.5.2022, LPartG §11 Rn. 4.

21)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는 보통 연대의무협약으로 번역된다.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제42호(2012), 201-204면 참조.

22) Loi n°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23) 안문희, “PACS(pacte civil de solidarité), 연대의무협약에 대한 연구: PACS 제정 후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법과사회 제42호(2012), 203면.

24) Hugues FULCHIRON, Philippe MALAURIE, La famille, L.G.D.J., 2006, p. 177 et s; Patrick COURBE, Droit de la famille, Dalloz-Sirey, 2009, p. 261.

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PACS가 도입된 1999년 이후 혼인과 PACS의 성립 추이를 비교해 보면, PACS의 성립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²⁵⁾ 혼인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CS 시행 초기에는 PACS의 성립수가 전체 혼인수의 약 10% 정도였으나(2002년 혼인수 286,169건, PACS의 성립수 25,305건), 2019년에는 약 90%에 이르고 있다(2019년 혼인수 224,740건, PACS 성립수 196,370건. 2020년 혼인수 154,581, PACS 성립수 196,370. 2020년에는 오히려 PACS 성립수가 혼인수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²⁶⁾

2013년에 프랑스에서 동성혼이 허용되었지만, 이와 관계없이 PACS의 성립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성간의 결합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2000년에는 동성간의 PACS 성립비율이 전체의 24%였으나, 2020년에는

5%에 미치지 못하였다). PACS가 도입될 당시에는 동성혼에 대한 대안이라는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PACS 도입 당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프랑스에서의 혼인 및 PACS의 변화추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참조.

2. 성립

(1) PACS는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동성 또는 이성인 2인의 성년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contrat)이다(프랑스 민법 제515-1조). PACS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i)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성년자이어야 한다(프랑스민법 제

[혼인 및 PACS 통계: 1990-2020]²⁷⁾

연도	혼인			PACS		
	이성	동성	합계	이성	동성	합계
1999			293,544	3,551	2,600	6,151
2000			305,234	16,859	5,412	22,271
2001			295,720	16,306	3,323	19,629
2002			286,169	21,683	3,622	25,305
2003			282,756	27,276	4,294	31,570
2004			278,439	35,057	5,023	40,080
2005			283,036	55,597	4,865	60,462
2010			251,654	196,405	9,145	205,550
2013	231,225	7,367	238,592	162,609	6,083	168,692
2014	230,770	10,522	241,292	167,469	6,262	173,731
2015	228,565	7,751	236,316	181,930	7,017	188,947
2016	225,612	7,113	232,725	184,425	7,112	191,537
2017	226,671	7,244	233,915	188,233	7,400	195,633
2018	228,349	6,386	234,735	200,282	8,589	208,871
2019	218,468	6,272	224,740	188,014	8,356	196,370
2020	149,983	4,598	154,581	165,911	7,983	173,894

25) 특히 2005년, 2007년, 2008년에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2005년과 2007년에 PACS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K-BGB/Junggeburt, Länderbericht(Frankreich), Rn. 1

26) 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1,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

27) Mariages et Pacs, Données annuelles de 1990 à 2021, 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2381498#tableau-figure1>.

515-1조),²⁸⁾ ii) 직계혈족(직계인척)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간이 아니어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15-2조 제1호), iii) 이미 혼인한 상태에 있거나(프랑스민법 제515-2조 제2호)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PACS가 성립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15-2조 제3호).

(2) PACS를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분등록공무원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 자신들이 작성한 PACS에 관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등록공무원은 접수한 신고를 등록한 후 신고에 대한 공고절차²⁹⁾에 착수하게 된다(프랑스민법 제515-3조 제1항 및 제3항).

PACS 신고가 등록되면 당사자 각자의 출생증명서에 PACS에 관한 약정, PACS의 성립 사실 및 상대방의 신분사항이 기재된다(프랑스민법 제515-3-1조 제1항). PACS 성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신분등록공무원이 신고를 접수하여 등록한 날부터 발생하며, 제3자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이 완료된 때부터 발생한다(프랑스민법 제515-3-1조 제2항).

3. 효력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PACS 당사자는 서로에 대해서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프랑스민법 제515-1조 및 제515-4조). PACS의 성립에 의해서 인척관계는 발생하지 않으며, 성(姓)도 변경되지 않는다(PACS의 당사자는 공통의 성을 사

용할 수 없다).

PACS 당사자는 신고 시에 제출하는 약정서를 통해 생활비용의 액수와 분담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 PACS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재산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재산제로서 별산제가 적용되므로,³⁰⁾ PACS 성립 전에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물론, PACS의 존속 중에 소득활동이나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가 된다(프랑스민법 제515-5조 제1항).³¹⁾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채무)에 대해서도 별산제가 적용되지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이 인정된다(프랑스민법 제515-4조). 다만 PACS의 존속 중에 취득한 재산 중에서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예를 들어 가재도구 등)은 공유로 간주되어 PACS 당사자 각자에게 균등한 권리가 인정된다(프랑스민법 제515-5조 제2항).

(2) 자녀에 대한 효과

PACS 존속 중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혼인의 출생자가 된다. 혼인 중에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적용되는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프랑스민법 제312조)이 PACS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PACS 당사자는 인지 여의하여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PACS 당사자 2인이 자녀를 공동으로 입양하는 것은 원래 허용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입양법 개정³²⁾을 통해 공동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28) 제한능력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PACS를 체결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461조, 제462조).

29)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신분등록에는 제3자의 이익제기가 가능한 공고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10일의 공고기간이 정해져 있으나(프랑스민법 제64조 제1항), 혼인신고를 제외한 신분등록의 경우는 별도의 공고기간은 없으며, 이때의 공고는 신분 관련 사항의 신고절차가 완료됨을 의미한다(프랑스민법 제101-1조, 제101-2조).

30) PACS 시행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PACS 성립 후에 취득한 재산은 양 당사자의 공유(지분은 균등)가 되었으나, 2006년 6월 23일 개정(2007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서 별산제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PACS 시행 이후 가장 의미있는 개정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PACS에 있어서 개인주의는 더욱 부각되는 한편, 당사자간의 유대관계는 약화되었다고 생각된다.

31) PACS 신고 당시 제출한 약정서를 통해서 공유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이런 경우에는 PACS 체결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각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재산(예를 들어 상속재산, 수증재산 등)을 공유에서 제외한다는 합의는 유효하다. 신고 당시에는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서 별산제의 적용을 받았더라도 PACS의 존속 중에 약정서의 변경을 통해서 공유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프랑스민법 제515-5-1조).

32) 입양 개정에 관한 2022년 2월 22일 법. Loi n°2022-219 du 21 février 2022 visant à réformer l'adoption.

4. 해소

(1) 사망이나 혼인으로 인한 해소

PACS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거나 혼인(PACS의 상대방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PACS는 자동적으로 해소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1항).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 PACS 당사자에게는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생존한 일방은 프랑스민법 제763조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사망한 일방이 임차한 주택에서 1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가구 및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동산에 대한 용익권을 가진다(프랑스민법 제515-6조 제3항).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해소

PACS 당사자는 협의 또는 단독으로 PACS를 해소할 수 있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3항). PACS의 해소에 합의한 당사자 2인은 PACS 신고지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PACS의 해소에 관한 공동의 의사를 제출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4항).

PACS 당사자 일방이 PACS를 해소하려는 경우에는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사본을 PACS 신고지의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5항). PACS 해소의 의사를 전달받은 신분등록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등록하고 공고절차에 착수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6항). PACS 해소의 효과는 그 사실이 등록된 날에 발생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7항).

(3) 해소의 효과

대부분의 PACS는 그 존속기간 동안 별산제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소(생전 해소와 사망에 의한 해소를 포함한다) 시에도 별산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관계에 대한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청구나 연금에 대한 권리

의 청산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결정한다(프랑스민법 제515-7조 제10항).

PACS를 일방적으로 해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PACS의 일방적 해소 가능성은 PACS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³³⁾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PACS의 일방적 해소가 1789년의 인권선언에 기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원칙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IV. 벨기에

1. 법정동거의 도입과 현황

(1) 1996년 초부터 벨기에의 몇몇 도시 및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권한에 의해서 동성간 및 이성간의 동반자관계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부에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반자관계는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었고 단지 상징적인 의미밖에 갖지 못했으나, 벨기에의 입법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⁴⁾ 그 결과 1998년 10월에 법정동거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998년 11월 23일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0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³⁵⁾

법정동거(cohabitation légale)라는 새로운 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가족법상의 신분도 창설하지 않으며(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의 친족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당사자 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실용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런 이유로 법정동거에 관한 규정은 벨기에 민법전 제1편(人)³⁶⁾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유권취득의 방식에 관한 제3편에 편입되었다. 벨기에 입법자는 이 새로운 제도가 당사자 사이

33) NK-BGB/Junggeburth, Länderbericht(Frankreich), Rn. 196.

34)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0.

35) 23 NOVEMBRE 1998. - Loi instaurant la cohabitation légale.

36) 벨기에민법전 제1편(人)에는 인(人) 이외에 혼인, 친자관계, 후견 등에 관한 규정들이 자리잡고 있다.

에 신분관계를 창설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달리 등록동반자관계라는 용어 대신 법정동거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

(2) 2000년에 법정동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3년부터 벨기에에서도 동성혼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법정동거제도는 그와 관계없이 병존하고 있다. 혼인에 있어서 동성혼과 이성혼의 비율, 법정동거(법정동거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관계없이 허용되는데, 이에 관한 별도의 통계는 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의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00년 이래 혼인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법정동거수는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법정동거수가 혼인수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혼인 법정 동거: 2000-2020]³⁷⁾

연도	혼인			법정 동거
	이성	동성	합(건수)	합(건수)
2000			45,123	2,694
2001			42,110	10,796
2002			40,434	4,527
2003			41,777	5,712
2004	41,131	2,138	43,296	9,386
2005	41,087	2,054	43,141	15,513
2010	39,995	2,164	42,159	36,962
2015	43,914	1,091	45,005	40,770
2020	31,870	909	32,779	36,329

2. 성립

(1) 법정동거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벨기에민법 제 1475조). i) 법정동거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ii) 원칙적으로 성년자만이 법정동거를 성립시킬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법정동거를 성립시키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iii) 법정동거를 성립시키려는 사람은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법정동거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iv) 이외에 다른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도 법정동거는 허용된다. 또한 법정동거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다(예를 들면 2인의 자매 사이에 법정동거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동거는 본질적으로 혼인과 완전히 다른 제도로서 성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⁸⁾

(2) 법정동거는 당사자가 신분등록공무원에게 법정동거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으면 성립한다(벨기에민법 제1476조). 신분등록공무원은 법정동거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주민등록부에 기록한다. 신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법정동거가 신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3. 효력

(1) 법정동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며, 당사자는 이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벨기에민법 제1477조). 첫째, 혼인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혼인주택의 보호에 관한 규정(벨기에민법 제215조)이 법정동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정동거인 쌍방이 거주하는 주택은 그 중 1인이 단독소유자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³⁹⁾ 둘째, 법정동거인 쌍방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활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셋째, 법정동거인 일방이 공동생활과 자녀양육(법정동거인 쌍방이 양육하는 자녀로서 공동의 자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녀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다른 일방은 연대책임을 진다.

이러한 강행규정 이외에 벨기에민법은 법정동거인 쌍방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벨기

37) STABEL, La Belgique en chiffres; <https://statbel.fgov.be/fr>; 벨기에의 동성혼은 2003년 1월 30일 법을 통해 제정되어,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8) 벨기에민법 제213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신의를 지키며, 협조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동거의무에는 성적 결합의 의무도 포함된다. 반면에 법정동거의 당사자에게는 이러한 의무 중 어느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39) 그러나 법정동거인 일방은 언제든지 일방적인 의사로 법정동거를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Pintens, Partnerschaft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2.

에민법 제1478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정동거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재산관계에 한정하여 일정한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치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해당하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생존 동거인에게는 법정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동거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친생추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친자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지가 필요하다.

(2) 법정동거인은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강행규정을 보충하거나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벨기에민법 제1478조), 제1477조의 강행규정 및 공서양속에 위반하거나 친권, 후견, 법정상속에 관한 규정과 모순되는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법정동거는 당사자 사이에 부양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당사자는 계약으로 부양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법정동거 존속 중은 물론 동거 해소후의 부양에 관한 약정도 가능하다). 법정동거에 관한 계약은 주민등록부에 기입된다.

4. 해소

법정동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소된다(벨기에민법 제1476조 제2항). i) 일방의 사망, ii) 법정동거인 일방이 혼인한 경우(법정동거의 상대방과 혼인한 경우이든 제3자와

혼인한 경우이든 관계없다), iii) 법정동거인 쌍방이 공동으로 신분등록공무원에게 해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iv) 법정동거인 일방이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해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 경우 신분등록공무원은 8일 내에 다른 일방에게 해소의 의사를 송달하여야 한다(벨기에민법 제1476조 제2항). 신분등록공무원은 법정동거의 해소를 주민등록부에 기록한다.

법정동거에 대해서 별산제가 적용되었던 경우에는 법정동거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법정동거 해소 후의 부양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면 부양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⁴⁰⁾

V. 네덜란드

1. 도입과 현황

(1) 네덜란드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인의 동성 및 이성 사이에 동반자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등록동반자관계).⁴¹⁾ 네덜란드에서도 등록동반자관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혼인을 원하지만 혼인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동성 간에 혼인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으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간의 결합까지도 포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⁴²⁾

40) Nathalie Massager, Droit civil Tome I. Droit familial et droit patrimonial de la famille, droit des biens et droits réels, *Anthemis*, 2020, p. 72.

41) 2001년 4월 1일부터는 동성 간의 혼인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날부터 등록동반자관계에서 혼인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에서 등록동반자관계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42) 1990년 10월 19일 네덜란드 대법원은 신분등록공무원으로부터 동성혼의 수리를 거부당한 2인의 여성이 제기한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당시 네덜란드민법의 해석상 동성혼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유럽인권협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판결문의 말미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입법론적으로 동성간의 지속적인 동거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네덜란드의 입법자는 대법원의 이러한 의견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혼인 이외의 결합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에 연구에 착수하였다. 1994년 6월 8일 개정안은 ‘혼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즉 이성간)에 대해서는 등록동반자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등록동반자제도는 동성간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정권교체 이후 ‘혼인을 할 수 있으나 혼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등록동반자제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쟁은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 5일 법률(1998년 1월 1일 시행)은 동성커플뿐 아니라 이성커플에 대해서도 등록동반자관계를 허용하게 되었다. Pintens, Partnerschap im belgischen und niederländischen Recht, *FamRZ*, 2000, 69/74f. 당시에도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커플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다. Nuytinck, Das neue Personen- und Familienrecht in den Niederlanden, *StAZ*, 2000, 72/73.

네덜란드의 입법자는 프랑스, 벨기에의 입법례와 달리 등록동반자관계에 대해서 혼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등록동반자관계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혈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고, 부부간의 권리, 의무도 똑같이 인정된다. 법정부부재산제와 배우자 상속에 관한 규정도 등록동반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2) 2001년 네덜란드에서 성립한 혼인 중 이성 간의 혼인은 80,000건이었으며, 동성 간의 혼인은 2,400건으로 전체 혼인수의 약 3%를 차지하였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 성립한 이성 간의 혼인수는 62,146건이며, 동성 간의 혼인수는 1,419건이었다(남성 간의 혼인수 675건, 여성 간의 혼인수 744건).

한편 등록동반자관계에서는 이와 달리 이성간의 결합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1년에 등록된 동반자관계는 1,700건인데, 이 중 동성 간의 결합은 25%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 이 비율은 4.8%였으며, 2015년에는 3.45%에 머물렀다. 2018년에 등록된 19,830건의 동반자관계 중 19,181건은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동성간의 결합은 649건(남성간의 결합 311건, 여성간의 결합 338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2. 성립

네덜란드민법은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등록동반자관계는 이성간의 결합이든 동성간의 결합이든 관계없이 두 사람에 한하여 허용되지만(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1항), 이미 타인과 혼인중이거나 등록동반자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7항). ii)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근친간(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는 등록동반자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7항). iii) 원칙적으로 성년자만이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미성년자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6항).

당사자의 신청을 받은 신분등록공무원이 동반자관계등록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14일이 경과하면, 지방행정관청에서 당사자 및 2인 내지 4인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신분등록부에 동반자관계가 기재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a 제3항, 제5항, 제6항).

3. 효력

(1) 혼인에 준하는 효력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이성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본 벨기에나 프랑스의 입법례와 같지만, 효력에 있어서는 위의 두 입법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의 PACS나 벨기에의 법정동거가 혼

[혼인 등록동반자관계: 2000-2020]⁴³⁾

연도	혼인			등록동반자관계		
	이성	동성	합(건수)	이성	동성	합(건수)
1998			86,956	1,616	3,010	4,626
1999			89,428	1,500	1,757	3,257
2000			88,074	1,322	1,600	2,922
2001	79,677	2,414	82,091	2,847	530	3,377
2002	83,970	1,838	85,808	7,774	547	8,321
2003	78,928	1,499	80,427	9,577	542	10,119
2004	72,231	1,210	73,441	10,573	583	11,156
2005	71,113	1,150	72,263	10,699	608	11,307
2010	74,045	1,354	75,399	9,084	487	9,571
2015	62,912	1,396	64,308	12,331	441	12,772
2020	49,119	1,114	50,233	23,366	770	24,136

43) Marriages and partnership registrations; key figures (<https://opendata.cbs.nl/statline/#/CBS/en/dataset/37772eng/table?ts=1658713430280>); 네덜란드의 동성혼은 2001년 4월 1일부터, 파트너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인에 비하여 ‘가벼운 결합’이라면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 관계는 혼인에 준하는 ‘무거운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즉 혼인의 효력이 등록동반자관계에서도 거의 대부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동반자관계는 효력면에서 혼인과 별 차이가 없다).

(2) 등록동반자 사이의 관계

등록동반자와 상대방의 혈족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3조 제2항). 또한 등록동반자는 혼인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성(姓)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자신의 성 앞이나 뒤에 배우자의 성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9조. 네덜란드에서는 혼인 후에도 부부는 각자 자신의 성을 유지하며, 다만 원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부부간의 일반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도 등록동반자 관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등록동반자는 서로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고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1조). 등록동반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포함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각자의 수입과 재산에 따라 책임을 진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4조).

등록동반자관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 b, 제93조). 동반자관계의 등록 전에 당사자들이 법정재산제를 배제하고 다른 유형의 재산제를 선택하는 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정부부재산제인 공유제⁴⁴⁾가 등록동반자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로써 네덜란드의 입법자는 부부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록동반자관계에 대해서도 강한 경제적 유대관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등록동반자는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하며(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b, 제81조), 상속법에 있

어서도 배우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네덜란드민법 제4장 제8조).

(3) 등록동반자와 자녀의 관계

등록동반자의 일방과 상대방의 자녀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발생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3조 제2항). 등록동반자 쌍방은 그들의 가족에 속한 미성년자녀(공동의 자녀, 상대방 동반자의 자녀)를 보호, 양육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b, 제82조).

등록동반자관계에 있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의 남성 동반자가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혼인 중에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규정에 의하여 모의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것과 같다).⁴⁵⁾ 2인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등록동반자관계에서 동반자의 일방이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가 익명의 정자제공에 의하여 포태된 경우에만 한하여, 상대방 동반자가 자녀의 모가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2명의 모가 생기는 결과가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198조 제1항 b).⁴⁶⁾ 어느 경우이든(모의 동반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와 모의 등록동반자는 자녀의 부모로서 공동친권자가 된다.

등록동반자관계에 있는 쌍방은 자녀를 공동으로 입양할 수 있으나, 두 사람이 입양 전 3년간 동거해야만 하고 그 자녀를 1년간 부양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등록동반자 일방이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227조 제2항, 제228조 제1항 f호).

4. 해소

(1)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에 관한 규정 역시 대체로 혼

44) 이에 따라 등록동반자관계 성립 시 존재했던 재산과 등록동반자관계의 존속 중에 취득한 재산(채무 포함)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공동재산이 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94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증여자가 공동재산에 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수증재산이 있다.

45) 2013년 11월 27일 법률(2014년 4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이성 등록동반자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혼인중의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추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성 등록동반자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이 개정에 의해서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6) Boele-Woelki, Jüngste Änderungen und Vorschläge im niederländischen Personen-und Familienrecht, FamRZ 2015, 1554/1555.

인의 해소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지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만 한다)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다. 등록동반자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소된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80조c). i) 일방 당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후 다른 일방이 새로 혼인하거나 등록동반자관계를 맺은 때. ii) 등록 동반자관계의 쌍방이 해소에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공증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합의를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합의⁴⁷⁾가 신분등록부에 기록되면 등록동반자관계는 해소된다(합의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분등록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만 신분등록부에 기록된다. 네덜란드민법 제80조d 제3항). iii) 등록동반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 판결을 한 경우. 사전 별거와 같은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자의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구인이 재판절차에서 진지하고 일관되게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파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파탄 사실의 증명은 어렵지 않다.⁴⁸⁾ 등록동반자관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분등록부에 판결이 기록되면 해소된다(네덜란드민법 제80조e 제2항). iv) 등록동반자관계를 혼인으로 전환시킨 경우.⁴⁹⁾

(2) 등록동반자관계 해소 후 부양이 필요한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네덜란드민법 제80조e, 제157조), 상대방이 등록동반자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취득한 연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절반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네덜란드 연금청산법 제2조). 등록동반자관계가 해소되면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관계의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재산제인 공유제가 적용되었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네덜란드민법 제1장 제

80조b, 제100조 제1항).

VI. 정리와 분석 시사점의 모색

넓은 의미에서의 등록동반자제도는 크게 동성간의 결합만을 허용하는 입법례(편의상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라고 한다)와 동성 및 이성간의 결합을 아우르는 입법례(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라고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처음부터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므로, 동성혼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존속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했던 나라들이 동성혼의 입법과 동시에 더 이상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예외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동성혼을 도입하면서 등록동반자관계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간에 대해서까지 개방하는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와 달리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처음부터 단순히 동성혼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동성혼이 도입된 후에도 등록동반자관계가 독자성을 지니고 존속할 뿐 아니라 그 성립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효력 면에서 보면 제1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는 동성혼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각국의 입법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동성의 등록동반자관계에 혼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하려고 시도하였다(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등록동반자가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 반면에 제2유형의 등록동반자관계를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입법정책에 따라 등록동반자관계의 효력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네덜란드와 같이 등록동반자관계에 혼인과 유사

47) 이 합의에는 등록동반자관계가 파탄되었으며 그 관계의 해소를 원한다는 등록동반자 쌍방의 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네덜란드민법 제80조d 제1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동반자관계 해소 후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는 전동반자에 대한 부양, 임차주택에 거주했던 경우 누가 주택의 임차인이 될 것인지, 등록동반자 일방 또는 쌍방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했던 경우 누가 주택을 사용할 것인지, 공유재산의 분할, 연금에 대한 권리의 분할 등.

48) Rieck, *Ausländisches Familienrecht*, Niederlande, S. 11.

49) 반면에 2009년 3월 1일부터 혼인에서 등록동반자관계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효력을 인정한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 벨기의 법정동거와 같이 혼인과 비교하여 현저히 약한 효력을 인정한 입법례도 있다(프랑스의 PACS는 두 입법례 사이에 위치하는데, 벨기에의 입법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에도 법정부부재산제인 공유제가 적용되고, 관계의 해소 시에는 재산관계의 청산으로서 재산분할(연금분할 포함)이 이루어지는 반면,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프랑스의 PACS는 원칙적으로 별산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소 시에도 (귀속이 불명한 재산을 제외하면) 재산관계의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네덜란드는 등록동반자 사이에 부부와 동일한 부양의무를 인정하지만(해소 후의 부양의무도 인정된다), 벨기에의 법정동거에서는 아예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PACS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PACS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부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PACS 해소 후에는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관계의 해소에서도 나타난다. 네덜란드에서는 등록동반자관계의 해소에 관한 규정도 이혼에 관한 규정과 대체로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물론 당사자가 해소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혼과 차이가 있다),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프랑스의 PACS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의사로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혼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해당 국가에서 등록동반자관계의 성립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의 통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PACS와 벨기에의 법정동거는 최근 혼인율을 추월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네덜란드의 등록동반자관계는 혼인수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국 시민들의 상당수가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때 우리사회에서는 프랑스의 PACS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다. 혼인제도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의 PACS와 같은 ‘가벼운 제도’를 도입하면 혼인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가 비교적 쉽게 법적인 동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논거였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PACS가 도입된 후 출산율이 증가하였는가를 살펴보면 PACS의 도입과 출산율 사이에 의미있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에서 PACS가 시행된 것은 1999년 11월 16일이었으므로, 2000년부터 PACS가 본격적으로 성립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1999년 이성간 PACS 성립수 3,551건, 2000년 이성간 PACS 성립수 16,859건). 이 시기의 출산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9년 출생아수 744,800명, 2000년 774,800명, 2001년 770,900명, 2002년 761,600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최근의 이성간 PACS 성립수는 1999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약 10배 가량 증가하였는데(2017년 188,233건, 2018년 200,282건, 2019년 188,014건), 프랑스의 출산율은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지 않았다(2017년 출산아수 730,200명, 2018년 719,700명, 2019년 714,000명).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혼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PACS와 같이 보다 ‘가벼운 관계’를 도입하는 것이 출산율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별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프랑스에서도 PACS의 도입이 출산율을 높인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프랑스의 PACS나 벨기에의 법정동거와 같은 제도는 그 관계의 해소에 관하여도 이혼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사회에 프랑스의 PACS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해소에 대해서도 현행 이혼법보다 간단한 절차가 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미성년자녀의 보호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젊은 남녀의 결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겠지만, 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보호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혼인보다 가벼운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해소율도 이혼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을 자녀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자녀의 출생에만 집착하지 말고 태어난 자녀의 복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전 소장 영면 (1)

1998년 12월 17일

1998년 12월 17일, 국내 첫 여성 변호사로 상담소를 창설하여 평생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이태영 소장이 84세를 일기로 봉원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이태영 소장은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의 기반을 닦은 여성운동의 대모였으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인권운동가였다. 또한 서민들에게는 높기만 한 ‘법’의 벽을 허문 사회운동가였다. 선생께서는 상담소를 창설하여 ‘법률구조’ 사업을 이 땅에 처음 시작하여 정착시켰으며, 가정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가족법 개정에 평생을 바쳐 왔다.

이렇게 평생에 걸친 인권운동, 여성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1971년 세계법률구조상, 1975년 막사이사이상, 1982년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등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국민훈장 무궁화장, 3·1문화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이태영 소장의 빈소에는 1974년 11월 민주구국선언, 3·1민주구국선언 등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 과정에서 깊은 인연을 맺어온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희호 여사는 분향하며 눈시울을 적셨고, 김 대통령은 조문 후에 “친 부모나 누이를 잃은 심정이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빈소에는 정치권과 여성 종교 법조 재야 등 각계 인사와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으며, 8천여명의 추모객이 빈소를 찾아 그 뜻을 기렸다.



1998.12.21 이화여대 김영의홀에서 열린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소장 영결식

영결식은 12월 21일 오전 10시 이태영 소장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김영의홀에서 유족과 각계 인사 7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사회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은 김영운 목사의 집전으로 묵도, 약력 소개, 생전의 육성 녹음 방송, 조사, 조가, 헌화,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례위원장인 강원용 목사와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박사가 조사를 했다. 유족은 이후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이화여대를 출발, 이태영 소장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여의도 상담소 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노제에서 광배회 부소장은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상담소를 잘 이끌어 갈 것입니다. 부디 편안히 가시옵소서.”라며 상담소를 대표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태영 소장의 유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제1묘역에 자리한 남편 정일형 박사의 묘 옆에 안장됐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비폭력대화 통해 서로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이해하면서 관계 개선 시작

2020버6**폭행/2020버6** 특수상해,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3회,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5회 등 12회

상담기간

2020. 6. 4. ~ 2020. 12. 11.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18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3녀(17세, 12세, 9세)가 있다. 2020년 1월 사건당일, 남편은 모친이 보내준 잡채가 상한 것이었다고 비난하는 아내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아내는 이에 대항하여 와 인병을 던지고 과도로 협박하는 폭력을 하여 부부 쌍방이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초상담 시 갈등원인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이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부모 의존도가 높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는 점을, 남편은 아내가 남편의 원가족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아내는 화를 자주 내고 남편은 욕하는 기질이 있는 등 기질적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 당시보다 부부관계가 많이 좋아졌는데 남편이 사건 발생 후 1개월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 혼자 지내다 집에 들어온 후 이전과 달리 가사를 분담하였고 그에 따라 아내도 남편을 편안하게 대하면서 부부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었다.

상담에 대한 아내의 바람은 남편이 아내의 욕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었으며, 남편은 존경받는 남편,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상담을 통하여 아내는 남편의 입장과 태

도를 이해하고 일정부분 수용하게 되어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회사의 어려운 일도 의논하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의견도 제시하면서 대화가 잘 되는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종결상담 시 남편은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7~8점으로 평가하고, 향후 비폭력대화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아내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5점, 현재는 10점이라고 평가하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였다. 변화한 점으로 남편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아내를 이해해주는 것을 느꼈으며, 아내 자신도 남편을 이해하고 연민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음을 꼽았다.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2019버2***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8회,
집단상담(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2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14회

상담기간

2019. 12. 17. ~ 2020. 12. 2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혼인한지 11년이 넘었고 부부 사이에 1녀(9세)가 있다. 행위자는 음주문제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갈등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한 사실이 있다. 2019년 6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음주상태에서 아

이 혼육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폭행하였는데,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사건 후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행위자는 부모 집에서 지냈으며 12월 초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고, 12월 중순경 집에 들어갔다.

행위자는 2019년 11월 중순부터 술을 끊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단주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에 실천과제로 1) 단주 2) 어려우면 절주 3) 음주후 주사하지 않고 조용히 잠자기 4) 가사분담을 부과하였다. 상담초기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행위자가 이전보다 술을 덜 마시며, 술을 마시는 경우에도 주사를 하지 않고 가사분담 노력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마이너스 점수, 현재는 10점 만점에 0점으로 평가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행위자에게 바라는 바는 없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기대한다고 하였다. 행위자 상담 중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상담이 중지되었고, 보호처분 기간이 연장되었다.

상담 종결시 피해자에게 확인한 결과, 행위자는 폭력을 재발하지 않았고, 음주를 하여도 만취한 적은 없었다고 변화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바라는 바는 아무 것도 없고, 행위자가 딸에게 다정한 아با이 기만을 바랐는데 행위자의 의사가 아닌 딸의 의사를 기준으로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5점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피해자에게 더 바라는 바는 없이 지금 이대로 좋으며, 향후 과제로 자신이 가정에 더 충실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2020버4**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9회, 전화상담 1회,
집단상담(Zoom Cloud Meeting 앱
사용, 비대면 진행) 3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3회
등 22회

상담기간

2020. 6. 25.~ 2020. 12. 2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16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는 2남(15세, 12세)이 있다. 2020년 1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4회 폭행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함께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부부는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하였다. 피해자가 중국에서 이주해왔기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행위자도 중국어를 못하여 소통이 잘되지 않았지만 소개업자의 말을 믿고 결혼한 후 여러 면에서 맞지 않은 점을 느꼈다고 했다. 행위자는 결혼 초에는 1%의 노력의지가 있었고 15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포기하였다고 했다. 행위자는 결혼 초 피해자가 회사에 찾아와 자신을 비난하는 바람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된 일로 마음을 닫았다. 피해자는 결혼 초 행위자와 통화 중에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행위자가 설명을 해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않아 직장에 찾아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신을 투명인간 대하듯 무시하고 대답도 잘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호소하였고, 자신이 말을 하면 행위자가 응답하고 대화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랐다. 상담초기 우울감을 보이던 피해자는 상담 중기에 접어들면서 취업을 하여 활력을 찾고 우울감도 많이 해소되었다.

부부 모두 자녀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피해자는 상담 중 행위자가 폭력을 재발하지는 않았으나 좋아진 점도, 더 나빠진 점도 없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부부관계는 0점, 상담 종결시는 10점 만점에 2~3점으로 평가하였는데 행위자가 욕하지 않고 피해자가 부탁하면 20~30%는 들어주는 것이 이유다. 또한 피해자는 향후 혼자서도 아이들을 키우며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행위자는 심경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좋은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면 자녀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8

●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한다고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Q 문 24 | 남편이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 왔고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더니 아이와 저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을 따라 시댁에 들어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것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잘해 드리고는 싶으나 같이 살고 싶지는 않고 이혼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남편은 부모 집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부모 집으로 가 버렸으므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남편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 합의 하에 별거한 경우에 별거를 이혼사유로 내세우기는 어렵다

Q 문 25 | 남편과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 초부터 불화가 잦았습니다. 서로 냉각기를 갖기로 하고 6개월간 별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생활비는 남편이 약속대로 매월 송금해 주고 있는데 별거 기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화합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는 힘들 것 같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별거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 부부는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러나 귀하의 경우 불화를 없애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합의 하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별거하기로 했으므로 그 별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로 정한 별거를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희 부부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정식 결혼식은 하지 못했고, 양가 어른들과 직계가족만 모시고 식당에서 조촐하게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 했습니다. 아내와는 신혼 초부터 경제적인 부분과 성격차이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다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를 서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내가 저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 부부가 헤어진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다툼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드리자면,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

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여기서 '혼인의 의사'란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 즉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가 아내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아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또한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따라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미영 상담위원

브로커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아무도 모른다><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바닷마을 다이어리><태풍이 지나가고> 등을 통해 가족 영화가 얼마만큼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주제의식의 스펙트럼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입증했다. 2018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에서는, 좀도둑질이 주요 생계 수단인 어떤 수상쩍은 가족의 결합과 해체를 다루며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정상성’이 가족을 구분 짓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통렬하게 물었다. 그리고 4년 후, 그는 한국인 배우들을 데리고 찍은 <브로커>를 통해 <어느 가족>이 던졌던 질문을 이어간다.

빛쟁이에게 시달리는 세탁소 주인 상현(송강호)과 베이비 박스 시설의 직원 동수(강동원)는 베이비 박스에 놓인 아

기 우성을 몰래 데려간다. 그들은 정식 입양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아기를 파는 브로커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우성의 엄마 소영(이지은)이 아기를 찾으러 돌아오고, 세 사람 사이에는 난처한 적대감이 흐르지만 결국 소영도 우성의 새 부모를 찾는 여정에 동행하기로 마음먹는다. 한편 형사팀장 수진(배두나)과 후배 형사(이주영)는 이들 모두를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조용히 뒤를 쫓는다.

소영은 비슷한 처지의 가출 소녀들을 모아다가 성매매를 시키는 ‘엄마’의 밑에서 일했다. 우성의 아버지 역시 성 구매자 중 한 사람이었다. 소영이 마주치는 사람들은 모두 ‘대체 왜 아이를 진작 지우지 않고 이제 와서 버리느냐’라고 묻는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어린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임신중단이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는 주변 사람들의 질문과, 태어난 후에 그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아예 태어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이 더 큰 죄인지 반항적으로 따지는 소영의 질문은, 그저 ‘현행법’의 기준으로만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정말 어렵다.

엄마가 자신을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갔고 언젠가는 엄마가 찾아와 주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살았던 동수의 입장에서서는 또 다른 측면을 조망한다. 한국의 실정법에서 보육시설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했다(다행스럽게도 2022년부터 시설 청소년 보호 기간은 만 24세로 연장되

었다). 그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버팀목 없이 가혹한 사회로 쫓겨나오다시피 내몰린다. 아이들이 차근차근 삶의 규칙들을 터득할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직후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또다시 거둬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버림받는 경우가 잦았다. 일단 소중한 생명이므로 주어진 삶을 일단 살아보자, 라는 희망으로 이 상황을 방관하기엔 현실적 고통이 너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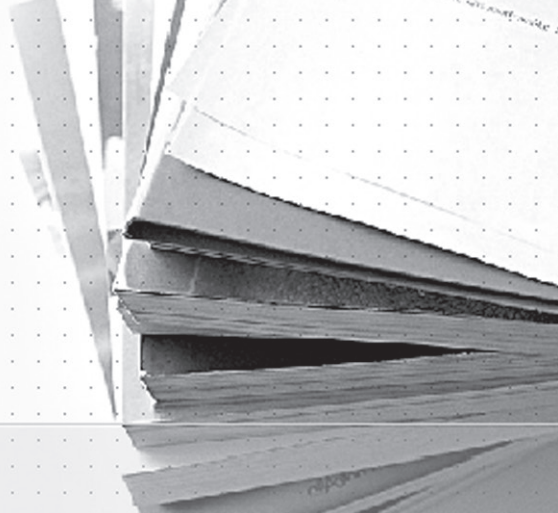
동수가 경험한 유일한 가족 공동체였던 보육원 생활, 소영이 경험한 ‘엄마’가 운영하는 성매매 커뮤니티만이 문제가 아니다. 상현은 이혼 혹은 별거 상태다. 제법 성장한 딸은 초라한 아빠의 모습에 냉담한 경멸을 내비치고 전 아내는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전언을 딸을 통해 전해온다. 우성의 입양을 희망하는 ‘구매자’ 부부들의 모습에서도, 과연 아이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키울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책임한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우성이를 잘 키워줄 새로운 부모를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떠도는 상현 일행이, 이 기묘한 대안 가족이 그나마 각자가 품고 있는 상처와 어두운 비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 주고 서로를 위해 특별한 각오를 품고 희생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영화가 제시하는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감독이 던지는 질문일 것이다. 무엇이 정상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물론 이 영화의 윤리적 지점은 아슬아슬하다.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준다는 ‘선의’ 아래 벌어지는 인신매매의 현

장이 결코 블랙 유머로만 다가오지 않는다(요즘 대두되고 있는 대리모 논쟁까지 떠올리게 된다). 영화는 그것을 의식한 듯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데, 두 형사들과 소영이 모성에 대해 입씨름을 주고받는 장면이라든가, 왜 아이 아빠한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엄마만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는 소영의 항변이라든가, 상현과 동수라는 두 ‘인신매매범’에게 소위 ‘여성적인’ 특질들을 부여하는 등(극 중에서 우성을 돌보는 역할의 대부분은 소영보다는 상현과 동수가 맡는다)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도발적인 질문과 대안을 함께 던지는 것이다. 이 영화가 선택한 결과와 답을 받아들일지는 관객 각자가 선택할 몫이지만 말이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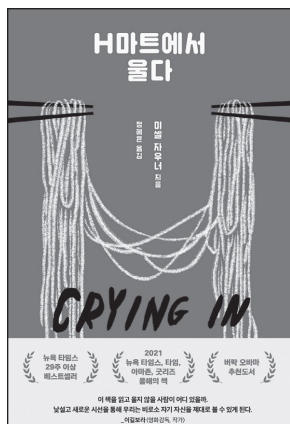




H마트에서 울다

미셸 자우너 지음
정혜윤 옮김

문학동네, 2022



재패니즈 브렉퍼스트의 2021년 앨범 'Jubilee'를 유튜브에서 찾아 들으며 이 글을 쓴다. 얼터너티브 록이라니 웬지 너무나도 떠오르고, 그러면서도 나른하고 평온한 음악이다. 이 책 『H마트에서 울다』를 쓴 미셸 자우너가 보컬이자 기타리스트로 있는 미국의 인디 팝 밴드가 재패니즈 브렉퍼스트다. 그저 나무쟁반에 연어구이와 미소 된장국이 있는 일본식 조식이 떠올라서 이름 붙였다는 이 밴드는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두 번 올랐으며, 미셸 자우너의 이 책은 뉴욕타임스에서 41주 이상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책을 읽으며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몇 년 전 24시간 정도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였다. 응급실에 갔다가 다행히 항생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정신이 들었다. 잠이 오락가락 했지만 정신은 명료해서 중환자실의 이모저모가 귀에 들렸다. 두 번의 죽음을 들었다.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이 순서대로 보호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조용히 숨죽여 울음을 삼키며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 나는 누워서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은 결국 끝에 가서는 부모에게 미안한 건가. 그 때가 생각났다. 그리고 또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안반과 시루를 생각했다. 해가 길어진 여름날 오후에 할머니는 마루에 안반을 놓고 콩가루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밀었다 접었다 하면서 칼국수를 만들었다. 국수를 칼로 썰고 끝부분을 좀 넓게 남겨서 길게 잘라 연탄불에 구워 주셨다. 세상 고소한 과자. 그리고 때때로 부엌 한구석에 있던 커다란 시루. 시루를 덮어 놓은 베 보자기를 열어보면 드물

게 갈비찜이 있기도 했고 대보름이면 오곡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진짜 갈비찜과 오곡밥은 시루에 찌는 것이라 알고 있다. 압력밥솥 따위. 하지만 이제 어디에도 할머니의 칼국수와 오곡밥과 지난한 입덧에서 나를 구원해준 마늘쫑 장아찌는 없다. 여섯 살까지 나를 업어준 할머니, 육교가 생길 때까지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던 할머니를 이제 영원히 먹을 수 없게 된 음식으로 추억한다.

한국인 엄마와 유대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이 책을 쓴 딸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느 미국 엄마들과는 다른 자신의 한국인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다. 뮤지션의 길을 걸으며 엄마와 점점 더 멀어지던 25살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괴로운 투병 과정을 함께 겪는다. 힘든 투병 끝에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미셸 자우너는 생각한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던 엄마가 없다면 나는 한국인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시아 식재료를 전문으로 파는 슈퍼마켓 체인 H마트에서 장을 보며 엄마를 생각한다. 그리고 즐겨 먹던 김의 상표를 물어볼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며 운다. H는 한아름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미국 생활에 편입된 한국 음식들과 사춘기, 폭풍의 시간을 겪는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가 익숙한 듯, 새로운 듯 다가왔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나는 H마트에만 가면 운다.” 무슨 뜻인지 대번에 이해가 가던 첫 문장이다.

이숙현 편집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소에서 실무수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최 준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상담소 실무수습 과정에 지원했던 이유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법률구조와 가사소송 양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가사소송을 중심으로 법률구조를 진행하는 상담소의 실무수습 과정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실무수습 과정이 끝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호기심과 같은 가볍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경외심과 안타까움과 같은 무거우면서도 양가적인 감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책상에 앉아 읽어왔던 판례와 본소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법률구조 서류 검토였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 평온해야 할 가정 내에서 사랑하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발생한 끔찍한 가정폭력 사건, 약속된 금액조차 지급하지 않는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생존을 위해서 또 자신이 아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든 찾아내야 하는 양육비청구 사건,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의 새로운 부모가 되어주고자 함에도 친권이 없어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 후견인 신청사건 등 하나같이 씁쓸한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법률구조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라는 점, 저희가 검토한 서류는 실제 발생하는 사건 수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상담소와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루어진 상담참관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 못할 사연을 털어놓는 내담자부터,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하지만 한 마디, 한 마

디 꺼낼 때마다 몸을 파르르 떨고 있는 내담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해내듯 사정을 설명하는 내담자까지.... 법률구조 서류를 검토하며 보아 온 당사자들은 문서가 아닌 현실 속에서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구조하는 것이 상담소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할 이야기를 상담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소송뿐만 아니라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백인변호사단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구조를 실현하는 것을 수습 기간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소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소송 이후의 삶을 구조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 ‘라오니모임’을 통해 가정폭력에 의해 삶이 파괴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고,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교육강좌 ‘동지교실’을 통해 반복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금전적 동기 부여 보다는 신념에 의한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류의 평화는 가정의 평화로부터” 이태영 소장님께서 내거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이념입니다. 실무수습 과정에서 소송구조의뢰서, 상담참관 보고서, 소장 등을 작성하고 지도받으며 법률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크게 배운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상담소의 실무수습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의 일부분을 인용하며 마치겠습니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개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입니다.” 상담소에서 배우고 느낀 바를 잊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지킴으로써 개인의 삶,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원 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2주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루어진 실무수습은 실무를 익히는 데 결코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현실은 참담했고, 교과서에서 익힌 지식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사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어떠한 유형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법률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건들을 처리해내시는 상담소 상담위원님들의 마음가짐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금전적 유인 또는 사회적 지위에 크게 반응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의 업무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선에 대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향후 법조인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나,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주변에도 관심을 갖고 살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가사 분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번 실무수습은 앞으로 프로보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탐구해보는 기회였습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 가족법동아리의 창립 준비를 위해서도 매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사와 관련하여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준비 중이던 찰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덕분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할 수 있었던 시간은 향후 형성될 네트워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업무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가사에 관심 있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법조인들이 상담소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자리잡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상담소에 백인변호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복귀하여 실무수습을 통해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기반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 저 또한 변호사단의 일원이 되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좋은 기회를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박 수 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주로 예정되어 있던 실무수습이 벌써 끝났습니다. 여의도로 출근하는 인파에 휩쓸리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어떻게 출퇴근 하나’ 걱정했던 첫날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2주가 금방 지나갔네요.

실무수습 기간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를 읽고, 소송구조서류를 읽고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참관하고, 라오니모임과 등지교실을 참관하고, 사이버상담 답변을 작성하고, 소장을 쓰고 판례를 읽는 과제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과정 전반적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운영 체계와 상담 방식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법에 대한 지식도 더 쌓였고, 실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내담자와 의뢰인에게 고민거리가 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자도 아닌 제3자가 자신의 고민을 듣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도 기꺼이 참관을 허락해주신 모든 내담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지식보다도 더욱 많이 남는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구성원이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가치관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뵈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런 가치관과 인품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후 변호사가 되어 업무를 하게 된 때에도 지표로 삼을 만한 값진 이야기를 해주신 분

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존재하는 진정한 의의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존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무수한 노력에 대해서는 지난 2주를 통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말씀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감명 깊었던 말씀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지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실무수습생들을 잘 챙겨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귀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들 한분 한분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실무수습 시작 전부터 마지막 날까지 실무수습생 모두를 잘 챙겨주신 박소현 부장님과 조은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소한 궁금증까지도 친절하게 답해주신 김민선 변호사님과 박슬기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하계 실습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감사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항상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관련 문제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부담을 덜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주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하 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시절 가족법 수업을 들은 것을 계기로 법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가족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실무수습 기관을 찾아보던 중 마침 본교 법전원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었기에 운 좋게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소와 가정법원에서 내담자의 법률상담을 직접 참
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
는 학교 열람실 안에서 타이머를 올려놓고 빠르게 종이 위
의 사실관계를 읽어 어떤 법리를 적용해 어떻게 결론을 내

릴까만 고민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상담참관을 하며 제가 그간 행간의 ‘사람’을 읽어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관한 상담은 모두 법률상담이었지만 가사사건의 특성 상 때로는 내담자가 마음 속 응어리를 털어놓고 위로받는 심리상담의 역할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 형사고소나 소송이어도 가
족이기 때문에 내담자분이 선뜻 이를 요구하지 못하고 합
의나 다른 법률절차를 물어오기도 하였고, 상담위원님이
홍분한 내담자를 진정시킨 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꿰뚫
어 보시고는 대안적인 절차를 권하기도 하셨습니다. 감정
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것이 가족 간 문제이기 때문에, 가사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항상 중립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부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짧은 2주 동안 몇 차례 상담을 참관하고, 기록을 몇 부 읽어보기만 해도 이입이 되어 슬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가족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곁에서 도와주셨을 위원님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담이 한 차례 끝날 때마다 상담위원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몇백 번째로 비슷한 가정폭력 사연을 접해도 항상 새롭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 상담위원님의 말씀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팀 과제로 소장과제를 수행하며 수습 동기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하고 관련 판례를 찾아보며 시너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자가 누구고 어떤 소를 제기해야 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며 수시로 변호사님께 관련 법리에 대해 여쭙보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답해주셨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누굴 당사자로 어떤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말씀해주셔서 가사소송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1주 차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라오니 모임¹을 줌
으로 참관하였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격려하면서 전보다 후련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아왔던 이런 모임이 실제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2주 차에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동지교실' 강의를 속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원인과 양상, 그리고 치유방법에 대한 강의와 참여자들의 공감과 반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생했던 친구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친구의 가족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활용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이 아닌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임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 학부 때 들었던 가족법 수업이 머릿속에서 가물 가물했기 때문에 첫 출근 때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박소현 부장님이 주신 상담사례집과 다양한 자료집들을 정독하면서 어느 정도 가족법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부터 사이버 상담 답글을 달고 법률구조의뢰서를 작성하며 관련 법리들이 실제 여러 사안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역할이나마 제가 실무에 개입한다 생각하니 관련 판례와 법리를 더 꼼꼼하게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안은 동기들과 의논해보기도 하였고, 조은경 상담위원님이 수시로 실무수습 토크방에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 올려주셔서 더 수월하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최종본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 느꼈던 보람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부장님과 상담위원님이 수시로 보고서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글을 수정하고 보충하며 가족법의 다양한 제도와 쟁점들을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정성으로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그 구조실무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그 중심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 정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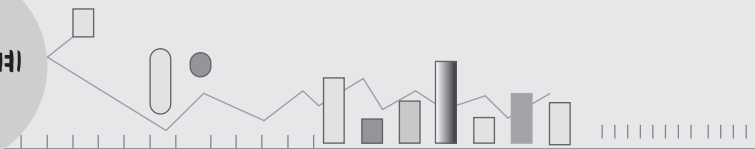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관한 상담 중에서 청각장애인 내담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사건만 일 년에 천 건이 넘는 바쁜 상담소에서 청각장애인을 배려하고자 매번 대면해서 정보전달을 하시는 상담위원님을 보고 변호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정말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평생 동안 겪는 가장 큰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새기고 살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무수습 경험 덕분에 가사 사건에서 어떤 유형의 사건이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법을 공부할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님이 내 주신 과제를 해결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숙지했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법은 항상 꼼꼼하게 다각도로 공부해야 함을 새겼습니다.

상담위원 선생님들께서 항상 바빠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저희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다가와 주신 덕분에 저희가 훨씬 더 편하게 많은 것을 여쭙보고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업무나 학업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실무수습 진행 중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점심 식사도 추천해 주신 곳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초기 창립 이념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단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훗날에는 변호사가 되어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본소7월 15일부터 화상상담 실시 - 전국 어디서나 가정법률상담 가능

본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상담과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된 현실을 반영하고, 내담자들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7월 15일부터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화상상담의 실시로 그동안 가정법률에 관해 상담받고 싶었으나 장소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본소 방문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pc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문 상담위원과 상담할 수 있게 되었다.

본소의 화상상담은 첫 오픈일인 7월 15일 9건이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오픈일부터 7월 29일까지 2주간 53건이 접수되었다. 화상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주간의 화상상담에 대해 일차적인 분석을 해 본 결과 화상상담의 신청자는 서울 뿐 만 아니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 등 전국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43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연령은 20대 4명, 30대 19명, 40대 22명, 50대 4명, 60대 이상 4명 등으로 30-40대가 77%를 차지하였다. 상담내용을 보면, 부부 갈등 및 이혼 등과 양육비, 가정폭력, 상속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화상상담신청은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상담소에서는 예약확인 메일 및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화상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1회기에 30분씩으로 상담시간이 정해져 있다. 본소의 화상상담은 가정법률 전반에 걸쳐 상담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무료소송 등의 소송구조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상상담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은 나타나진 않았으나 본소에서는 화상상담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관련 사진 2면)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8일 본소 8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의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사업인 『2022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간담회가 있었다. 가정폭력피해자 법률구조서비스 업무 관련 절차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 제시가 있었던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변호사회의 이수연 변호사, 최사라 변호사, 문혜정 변호사, 민고은 변호사와 본소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권지연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관련 사진 2면)

본소 광배희 소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환담

정현미 원장, 본소에서 실무수습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생 격려

본소 광배희 소장은 7월 13일 본소를 방문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원장을 맞이하여 환담하였다. 이어서 정현미 원장은 본소에서 실무수습에 참여하고 있는 이화여자대 법학전문대학원생(2학년 박수진, 임하원)들을 만나 실습 소감 등을 공유하고 남은 기간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는 본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함께 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실무수습 진행

2022년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7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 과정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사례를 체험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법률지식을 현실에 접목,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익 및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무수습은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이해, 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이해, 법률구조 서류 검토, 법률구조의뢰서 등 법률구조 서류 작성, 사이버 상담 실습, 상담(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변호사 업무 소개 및 실습으로 소장 작성과 판례읽기,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과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교육강좌 참관(zoom) 및 기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총 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최준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원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박수진 / 임하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강경은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지난 7월 21일 본소 교육프로그램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가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zoom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병후 원장은 사이코패스의 정의와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으며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되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다음 강의는 8월 18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나, 방역지침의 변화에 따라 본소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

● 현장실습

7. 1 ~ 7. 31

동국대학교 김민선, 안서연, 이병철, 조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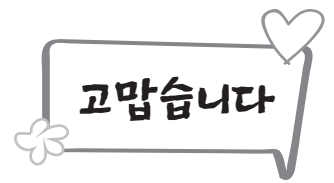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민정원, 정재원

● 출장법교육 및 순회상담

7.6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박슬기 상담위원

7.20.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7월 20일 서울가정법원 이
혼 사건 조정을 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7월 7일과 14일에 서울가
정법원에서 양육비 사건과 이혼 사건 등을 조정하였다.

2022년 7월 자원봉사자

• 전화상담을 도와주신

조균선 님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오영미,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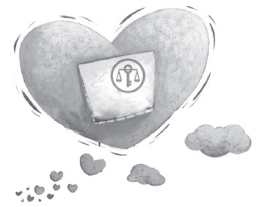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오영미 변호사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2022년 7월 상담통계

총 건수 5,095				
법률상담 (4,364)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979	3,264	113	7	1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12		39		80

• 인터넷 정보 이용 50,503 건

2022년 7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
한 총 상담건수는 5,095건이었다. 상담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36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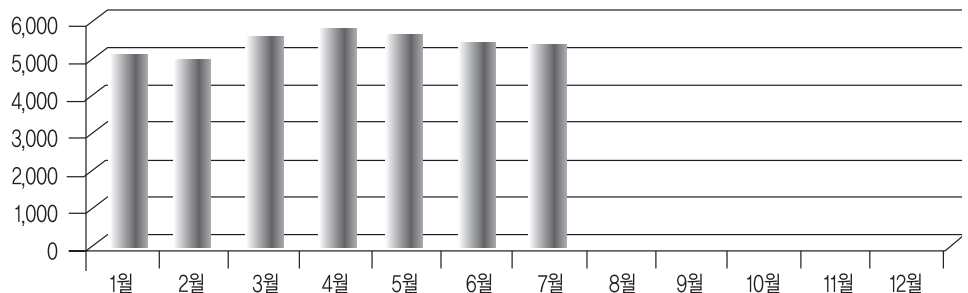
(85.7%), 화해조정 612건(12.0%), 소
장 등 서류작성 39건(0.8%), 소송구조
80건(1.6%)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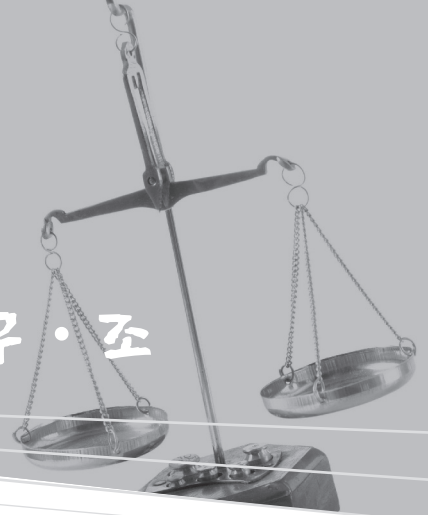
법률상담 4,364건을 사건내용 별
로 살펴보면, 2022년 6월에 비해
가사사건은 이혼(24.2%→25.5%),
위자료·재산분할(7.7%→9.4%), 친
권·양육권(4.7%→5.2%), 면접
교섭권(3.2%→3.9%), 친생자존
부(3.2%→3.3%), 혼인무효·취소
(0.3%→0.4%), 이혼무효·취소
(0.2%→0.5%), 가족관계등록부
(3.7%→3.8%), 개명(0.8%→0.9%), 성

변경(0.8%→0.9%), 파양(0.2%→0.3%),
미성년후견(0.5%→0.8%), 성년후견
(2.8%→2.9%)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
다. 민사사건은 부동산(0.1%→0.3%),
형사사건은 형사기타(0.4%→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36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
펴보면, 면접상담 979건(22.4%), 전화
상담 3,264건(74.8%), 인터넷상담 113
건(2.6%), 순회상담 7건(0.2%), 지상상
담 1건(0.0%)이었다.

2022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가정폭력으로 7년 간 별거 중
자녀를 학대한 남편과의 이혼

법률구조 2022-1-1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50대)는 피고(남, 5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한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홀로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잦은 폭행 및 폭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원고는 피고의 지나친 의존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2014년경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원고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2021년경 원고는 자녀로부터 피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안전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2. 5. 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이외에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2.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400,000원씩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5.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이 피고에게 연락하여 요청할 때까지 대면면접은 연기하고, 피고가 월 2회 사건본인에게 문자하는 것을 원고는 방해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원고는 사건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유지하고 바뀔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피고에게 알려주도록 원고는 사건본인을 지도한다. 추후 면접교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원고와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7.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2-1-26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89년경 해외에서 무역업을 하였는데 국내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가정불화로 이혼하였다. 이혼 후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지내던 중 2017년경 건강이 나빠져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고, 2020년경부터 지인과 함께 마스크 제조업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건강마저 좋지 못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과거 신청인은 필리핀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해외거주로 채무에 대하여 잊어버렸다가, 2017년경 한국에 입국하면서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실직을 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현재 상황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7. 7.)

채무자를 면책한다.

20년 이상 연락이 끊긴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75

담당 : 정연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60대)는 피고(여, 60대)와 1982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1997년경부터 원고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 입원 기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때 이혼이 되었다고 믿었다. 퇴원 후 함께 거주하던 집에 찾아갔지만 피고와 자녀는 퇴거한 상태였으며, 피고를 만날 수 없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자녀와는 연락이 두절된 채로 생

활을 이어갔으며 현재는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다. 원고는 수급자로 지정되어,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혼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불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 6. 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산을 빼돌리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아내와의 이혼

법률구조 2022-1-90

담당 : 김재성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70대)는 피고(여, 70대)와 2005년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다. 2010년경 원고의 직장암 수술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시작되었고 2013년경 피고는 함께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단절하였다. 이후 고령의 원고는 쪽방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운 처지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 5. 1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355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대)은 혼인 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자녀 셋을 양육하는 데에 전념하였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가계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다. 배우자는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

여 열심히 살아갔는데 불운하게도 간암을 앓게 되었다. 수년간 수술비를 비롯한 병원비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2007년경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장사를 시작했다. 신청인은 음식솜씨가 좋아 반찬가게를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렇게 개업한 반찬가게는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열심히 채무를 상환하였다. 그러나 2015년경 신청인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이후 2016년경에도 뇌졸중과 패혈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고, 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 이상 소득활동이 어렵게 된 신청인을 위해 자녀들이 대신하여 3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여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녀들마저 경제형편이 안 좋아지면서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건강악화로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는 신청인은 2,7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6. 28.)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1-1-493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30대)과 피신청인(남, 30대)은 2011년 6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9세, 여 7세)을 두었으나 2018년 4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2021년 2월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직장에 다니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왔으나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시점인 2021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직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월 80만 원 가량의 급여로는 생활이 힘들었다. 이에 신

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22. 7. 4.)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18년 000000 이혼 등 사건의 2018. 4. 24.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22. 6.까지의 미지급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미지급 양육비 중 1,000만 원을 분할하여 2022. 8.부터 10개월간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실패와 사기피해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494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대)은 1987년경 봉제공장을 운영하였다. 25명의 직원을 두고, 1년 정도 잘 운영하였으나 공장에 있는 기계들을 모두 도둑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신청인은 직원들 임금과 부자채 대금을 위해 대출과 사채를 얻었다. 이후 1991년경 신청인은 지인이 동업을 제안하여 기능성여성속옷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사업자금이 필요해 신용카드대출과 금융권대출 5,0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동업자가 유통회사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돈을 가져간 동업자가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 되었고, 신청인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도 가정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된 신청인은 일용근로를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쪽방에서 거주하며 1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하여 살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와 사기피해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신청인은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2. 5.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9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8월은 휴강, 9월26일)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12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사전예약 접수만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8월 18일	폭력적인 배우자에 대항하는 법
9월 22일	의심, 피해망상, 그리고 조현병
10월 27일	마음이란 무엇인가?
11월 24일	부부대화법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등지고실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서울가정법원 등 보호처분 대상자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9월 7일	모든 정신적 어려움의 근원,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0월 12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드는 분노조절장애	
11월 9일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기분장애	
12월 7일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독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에 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2년 8월 15일 ~ 8월 17일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2년 8월 15일
~ 8월 17일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SAMSUNG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률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22년 7월 15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가정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화상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